

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8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5. 2. 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최근 암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암 관련 검사항목을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암표지자검사 수수료 신설

(안 별표 제4호 다항)

나. 검사 수수료액은 9,000원으로 함.

(안 별표 제4호 다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및 근거

1)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

2)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

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4.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 고
4. 검사	가. 간염검사	1회	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,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가에 준한다.	인·허가 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.
	나. 수질검사	1회		
	다. 압표지자검사	1건당	9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구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 고	구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 고
1.	(생		략)		1.	(현행과		같음)	
2.	(생		략)		2.	(현행과		같음)	
3.	(생		략)		3.	(현행과		같음)	
4.	가. 간염 검사 나. 수질 검사 <u><신 설></u>	1회 1회	위생분야중사자등 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 한 수수료액.서울 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수가 에 준한다. <u>설></u>	인 · 허 가용이 아닌 것 에 한한 다.	4.	가. ---- ---- 나. ---- ---- <u>다. 암표 1건당 직자검사</u>	---- ---- ---- ---- <u>9,000원</u>	---- ---- ---- ---- <u>9,000원</u>	
5.	(생		략)		5.	(현행과		같음)	
6.	(생		략)		6.	(현행과		같음)	